

## 고려 성종대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전 경 숙\*

1. 머리말
2. 성종 전반기 군사제도의 정비
  - 가.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 나. 군조직의 정비
3.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의 개편
  - 가. 거란의 침략과 고려의 대응
  - 나. 거란 침략 이후의 군사제도 개편
4.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 성종대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 펼친 중앙집권 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기틀이 정착된 시기라고 평가된다. 군사제도 정비에 있어서도 고려 성종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기간에 걸친 통일 전쟁을 거친 고려에서 군사제도의 정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성종 초반에 이르기까지 군사제도

\*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중세고고학팀 책임연구원

정비의 목표는 통일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반을 확대한 호족들의 군사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왕권 아래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각 지방의 군사적 기반 축소와 그를 통한 왕권 강화라는 군사정비의 목표는 거란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방의 군사적 기반 축소와 외적 방어에 안정적인 군사기반 마련이라는 두 축의 효율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듯 성종대는 고려전기 군사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도를 추진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만을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성종대 군사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2군 6위의 중앙군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그들이 수행했던 군역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다.<sup>1)</sup> 최근 이민족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성종대 거란 침입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대의 배치·이동로, 그리고 전투지역 등을 지리적인 여건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려의 전략이나 전술을 밝혀져<sup>2)</sup> 고려시대 전쟁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고려 중앙군인 2군 6위에 대한 구체적인

- 
- 1) 강진철, 「고려초기의 군인전」,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 1963;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장동익, 「고려전기의 選軍-京軍 구성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6; 마종락, 「고려시대의 군인과 군인전」, 『백산학보』 36, 1990; 오영선, 「고려전기 군인층의 구성과 衛宿軍의 성격」, 『한국사론』 28, 서울대, 1992; 정경현, 『고려전기 二軍六衛制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혜옥, 「고려전기의 군역제」, 『국사관논총』 46, 1993; 홍승기, 「고려초기 경군의 이원적 구성론에 대하여」, 『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4; 권영국, 『고려후기 군사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이인철, 「고려전기의 軍人田」, 『군사』 30, 1995; 권영국, 「고려전기 군역제의 성격과 운영」, 『국사관논총』 87, 1999; 홍원기, 『고려전기 군제연구』, 해안, 2001; 김중수, 「고려시기 府兵制 운영과 그 원칙」, 『역사교육』 73, 2001.
- 2)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임용한, 『전쟁과 역사』 2·3, 해안, 2004·2008; 군사편찬연구소,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정혜은, 『고려, 북진을 꿈꾸다』, 플래닛미디어, 2009.

검토없이 성종대 이미 2군6위제가 완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거란 1차 침입의 목적이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서희의 강동6주 획득을 외교의 성과로 부각한 연구들도 성종대 군사제도 정비의 모습을 검토하는데 한계를 준다.<sup>3)</sup> 또한 소손녕이 고려와 화의를 맺고 철군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란이 원거리 전쟁에서 장기간 전쟁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파악하여<sup>4)</sup>, 원인을 찾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고려 군사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다. 즉 고려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라는 견해<sup>5)</sup>와 그와는 정반대로 고려의 군사력이 거란과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는 견해<sup>6)</sup>가 그것인데, 이들

- 
- 3) 이정신, 「강동6주와 윤관의 9성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 48, 2003; 박현모, 「서희의 협상리더십 연구」, 『국제정치논총』 49, 2009; 신복룡·박현모, 『고려 실용외교의 중심 서희』, 서해문집, 2010; 박상현, 「전략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서희의 강동6주 협상」, 『한국정치학회보』 44, 한국정치학회, 2010.
- 4) 金渭顯은 소손녕이 화의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 고려에 대군이 장기간 주둔하거나 깊숙이 진군했다가는 여진과 가까이 지내오던 고려가 그들과 연결하여 압록강 유역을 차단할 경우와 송과 연결하여 송이 북진할 경우를 고려, 2. 만약 80만 대군이 참전하였다면 그들의 군사습관상 打草谷이 불가능하며 당장 인마의 양곡과 먹이가 문제, 3. 산악과 강에서 싸워본 경험이 적은 거란군이 전쟁 수행에 어려움, 4. 고려 침공군 중에는 상당수가 동경도관내의 주민일 것이므로 이들은 본래 발해의 유민 또는 여진계 주민일 것. 따라서 이들이 전쟁 중 고려에 투기하거나 밀모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서희의 외교」,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999, 119~120쪽).
- 5) 羅鐘宇는 서희의 담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소손녕이 서희의 강직하고 당당한 인품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서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고려의 군사력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고려의 군사들은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상비군으로 거란의 군대보다 우수했다고 하였다. 이런 점은 거란이 봉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양국관계를 해결한 생각이 없었던 행동을 취한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거란의 침구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가 고려와 거란과의 정상적인 국교수립 때문이었다고 하였다(「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와 거란관계」, 『군사』 46, 2002, 221~222쪽). 나종우는 서희의 담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고려의 우수한 군사력을 들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제시 없이 소손녕의 군대가 서희와의 담판으로 물러난 상황을 통해 유추할 뿐이다.
- 6) 임용환은 ‘성종이 친정을 시도한 것은 당시 고려의 주력에서 시위군 내지는 친위

연구 역시 성종대 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핀 결과는 아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성종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군사제도 정비의 모습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의 국가체제 정비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중 군사제도 정비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군사제도 정비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성종 전반기의 군사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성종 전반기에 마련한 군사제도가 거란과의 전쟁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후 군사제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성종 전반기 군사제도의 정비

982년(성종 원년)에 올린 최승로의 상서는 성종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sup>7)</sup> 따라서 최승로의 상서를

---

군의 비중이 높았거나 군대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중앙군과 시위군까지 동원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였다(『군사전략에서 본 ‘서희 외교’』, 『고려 실용외교의 중심 서희』, 서해문집, 2010, 177쪽).

- 7) 김철준, 「최승로의 시무이십팔조」,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 1965; 이기백, 「귀족적 정치기구의 성립」,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이기백 외, 『최승로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하현강, 「고려초기 최승로의 정치사상연구」, 『이대사원』 12, 1975; 조남국, 「최승로의 시무관과 유불관」, 『유승국박사화갑기념논문집 동방사상논고』, 1983; 김호동, 「최은함-승로 가문에 관한 연구」, 『교남사학』 2, 1986; 이재운, 「최승로의 정치사상」, 『선운사학』 3, 1989; 김복순, 「최치원과 최승로」, 『경주사학』 11, 1992; 김갑동,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석근, 「‘훈요십조’와 ‘시무이십팔조’」, 『아세아연구』 42-1, 고려대, 1999; 홍승기, 「최승로의 유교주의사학론」, 『진단학보』 92, 2001; 최인표, 「고려 성종의 유교정치이념 채택과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5, 2004; 정성식, 「崔承老의 儒佛觀 탐구 : 「시무(時務) 28조」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6, 2009.

통해서 성종 이전의 군사제도 정비의 모습과 성종대 군사제도 정비의 방향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시무 28조 가운데 남아 있는 22조 중 군사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은 세 조항으로, 다음과 같다.<sup>8)</sup>

1조 - 우리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47년이 되었는데 사졸이 아직까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지방이 미개 종족들과 접경되어 경비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馬歇灘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石城을 국경을 삼자는 것은 大朝에서 정한 바입니다. 앞으로 두 곳을 전하께서 판단하시어 요해처를 선택하여 국토의 경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土人 중에서 말 달리고 활 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비에 충당하고, 또 그들 중에서 2~3명의 偏將을 선출하여 통솔시키면 경군들은 교대 경비하는 고생을 면할 수 있으며, 사료와 군량을 시급하게 운반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sup>9)</sup>

3조 - 우리 조정의 시위 군졸들은 태조시대에는 다만 궁성에서 숙위하는 일에만 충당되어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광종 때에 와서 참소를 믿고 장군들과 재상들을 책벌하였으며, 의혹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서 군졸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와 군에서 풍채 좋은 자들을 선발하여 입시하게 하고, 이들을 모두 內廩에서 먹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것을 번잡하기만 하고 이로온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종 때에 와서 비록 약간 감원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수가 많으니 바라건대 태조 때의 법을 준수하시어 단지 용감한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보내신다면 원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요, 나라에는 저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sup>10)</sup>

8)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전.

9)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士卒未得安枕，糧餉未免糜費者，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願聖上以此爲念。夫以馬歇灘爲界，太祖之志也，鴨江邊石城爲界，大朝之所定也。乞將此兩處，斷於宸衷，擇要害，以定疆域。選土人能射御者，充其防戍，又選其中二三偏將，以統領之，則京軍免更戍之勞，芻粟省飛挽之費矣。」

10) 「我朝侍衛軍卒，在太祖時，但充宿衛宮城，其數不多。及光宗信讒，誅責將相，自生疑

15조 - 태조께서는 궁중에 소속된 內屬 노비를 제외하고는 교외에 나가 살면서 토지를 갈아 세금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불교 행사를 많이 일으켜 부역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 밖에서 살던 노비들까지 불러들여 부역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내궁의 비용으로는 경비 지급이 부족하여 창고의 미곡까지 소비하게 되었는데, 이 폐단이 전하의 시대에 와서도 오히려 없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內廐에서 기르는 말의 수가 많아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 백성들이 그 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국경에 사변이 일어난다면 군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직 태조의 제도에 의하여 궁중의 노비와 廐馬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외방으로 보내십시오.<sup>11)</sup>

1조는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에 관한 것이고, 3조는 시위군졸의 정예화를 위한 축소에 관한 것, 15조는 궁중의 노비와 廐馬를 작정하여 군량을 원활하게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즉 최승로는 성종이 해결해야 할 군사문제로 국경의 확정과 강화, 군대의 정예화를 들고 있다. 최승로가 제시한 성종대 군제개혁의 방안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군비의 축소와 그를 통한 국가 재정의 확보, 나아가 왕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국경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예병을 중심으로 군액을 재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惑, 增益軍數. 簡選州郡有風彩者入侍, 皆食內廚. 時議以爲繁而無益. 至景宗朝, 雖稍減削, 泊于今時, 其數尙多. 伏望遵太祖之法, 但留驍勇者, 餘悉罷遣, 則人無嗟怨, 國有儲積。」

- 11) 「太祖除內屬奴婢, 在宮供役外, 出居外郊, 耕田納稅. 至光宗, 多作佛事, 役使日繁, 乃徵在外奴婢, 以充役使. 內宮之分, 不足支給, 并費倉米, 及乎聖朝, 弊猶未除. 且內廐養馬數多, 糜費甚廣, 民受其害. 如有邊患, 糧餉不周, 願聖上一依太祖之制, 酌定宮中奴婢廐馬之數, 餘悉分遣於外。」

## 가.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최승로가 기록한 고려의 북계는 태조가 정한 마혈탄과 대조가 정한 압록강가의 석성이다. 현재까지 마혈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의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승로가 상소문을 올린 982년에는 북계에 대한 2가지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영토획정의 주체인 大朝가 누구를 지칭하는가인데, 고려의 임금인 광종<sup>12)</sup>이나 경종<sup>13)</sup>, 성종<sup>14)</sup>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송이나 거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5)</sup> 그러나 고려의 영역을 정하는 주체를 중국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성종 원년에 제출한 상서문이라면 압록강가의 석성은 성종대 이전에 생긴 북계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이 북계를 확정했다면 성종이 추진한 북방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성종대 서북지역에서의 축성사례는 성종 2년 樹德鎮, 동계지역에서는 성종 3년 文州가 유일하다.<sup>16)</sup> 성종 3년에는 압록강 강안에 관성을 쌓아 여진과 거란의 동태에 대비하려 했다. 그 책임자로 형관어사 李謙直를 파견할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이 시도는 여진의 방해로 이점의가 납치되면서<sup>17)</sup> 실패하였다. 성종 10년에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축출한 사례가<sup>18)</sup> 보이기 전까지 정확히 성종대의 북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없다. 그러나 태조~경종대까지 축성한 사례를

12) 허인욱, 『고려 거란의 압록강 지역 영토 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0쪽.

13) 이정신, 「태조의 대건란 정책과 고려 건국이념의 형성」,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44쪽.

14) 이기백 외, 『최승로 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79~80쪽;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 89, 2004, 77쪽.

15) 최규성, 「고려초기의 북방영토와 구성의 위치비정」, 『백산학보』 76, 2006, 557쪽.

16) 『고려사』 권58, 地理3 북계 수덕진; 같은 책, 동계 문주.

17) 『고려사』 권3, 성종 3년.

18) 『고려사』 권3, 성종 10년 10월.

통해 추측하자면 압록강가까지 북계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그렇다면 마혈탄은 어디인가.<sup>19)</sup> 청천강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태조 이후 호족 세력의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북진정책’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성종이 군사를 파견한 북계는 청천강을 사이에 둔 귀주와 안주였으며, 성종 또한 후발대를 이끌고 안주에 둔을 치고 있었다.<sup>20)</sup> 고려군이 봉산전투에서 거란에서 패배하자 割地論이 대두했을 때 떼어주자는 땅은 서경 이북이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성종이 국경으로 삼은 것은 청천강가가 아닐까 한다.

북계를 확정된 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최승로는 高昌國을 당의 州縣으로 삼는 문제에 대한 일화를 들어<sup>21)</sup> 토인을 선발하여 방수하는 일에 충원하면 경군이 교대로 방수하는 노고를 덜어줄 것이고, 芻粟을 나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2)</sup>

이후 諸州鎭에 鎭頭를 대신하여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었다. 성종 5년(986)에는 청천강 유역과 평안남도의 주요 군사지역인 안북대도호부, 順州, 渭州, 殷州, 肅州, 慈州 등지에 방어사가 파견되기 시작했다. 이어 성종 8년(989)에는 동서북면의 병마사가 신설

19) 마혈탄의 위치에 대해 청천강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한국사』 중세편, 1961, 58쪽; 강성문, 「고려초기의 북계개척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27, 1983;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거란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97, 36쪽), 압록강 중류의 楚山, 江界 방면으로 보는 견해(김상기,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1959), 鴨綠江岸으로 보는 견해(박현서, 「북방민족과의 항쟁」, 『한국사』 4, 1974, 258쪽; 허인옥, 『고려 거란의 압록강 지역 영토 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평양부 동쪽 40리에 있는 마탄으로 비정하는 연구(김순자, 「고려 전기의 영토 인식 - 서희와 성종대를 중심으로」, 『고려 실용외교의 중심 서희』, 서해문집, 2010, 129쪽) 등이 있다.

20) 『고려사』 권3, 성종 12년 10월, 윤 10월.

21) 『정관정요』 권9, 安邊 第36 부분을 살펴보면 ‘당 태종은 고창국 정벌 이후 西州를 설치하는 內地化 정책을 단행하였지만 결국 서돌궐이 서주를 침범하면서 당의 내지화 정책은 실패하였다. 이때 褚遂良은 당의 직접 통치를 반대하면서 변방 방위를 위해 매년 천여 명의 병사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22)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되었다.<sup>23)</sup> 운영방식으로 開定軍을 비롯한 중앙군 중심의 방수체제에서 현지인을 활용하는 방수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지역주민과 토병을 동원한 현지 방어체제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현지인을 활용하는 방수체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4)</sup> 즉 거란이 침략할 때 안용진에서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성안의 주민들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공격해 거란의 침략 속도를 늦추는 등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 나. 군조직의 정비

시무28조 중 3조에는 시위군의 축소에 관해 건의하고 있다. 태조 때의 시위군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광종때에 와서 크게 증가되어 나라의 살림을 축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군사의 정예화와 나라의 재정을 위해 시위군의 감액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성종 전반기에 추진된 시위군 정비에 관한 내용이다.

- 가)-① (성종 3년) 이 해에 처음으로 군인들의 복색을 제정했다(『고려사』 권3, 성종 3년).<sup>25)</sup>
- ② (성종 7년 10월) 이 해 정월에 송나라 황제가 적전(籍田)을 친히 경작해 모범을 보인 후 대사면령을 내렸으며 연호를 단공(端拱)으로 바꾸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각종 은전을 내렸다. 그리고

23)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24) 지역주민과 토병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에 대해 구산우는 ‘경군의 방수역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발상에만 너무 경도된 것이어서, 당시 거란의 동태를 고려할 때 매우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며, 이 지역으로 침공한 거란에 의해 고려가 유린됨으로써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전개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78, 1992, 38쪽). 이정신 역시 ‘최승로가 국내의 안정, 유교사회의 구현에 관심을 두었을 뿐 거란의 대두로 야기될 수 있는 국토분쟁이나 전쟁 위험성에는 무관심했던’ 방책으로 판단하여(『江東6州와 尹權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 48, 2003, 284쪽), 최승로의 국경방어책에 대해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5) 「是歲, 始定軍人服色」.

여단(呂端) 등을 사신으로 보내 왕을 책봉하고 또 사면하는 뜻을 알렸다. 왕은 책명을 받자 교수형 이하의 죄수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문반으로서 오래 재직한 관리들은 복색을 상급의 것으로 고쳐 입게 하고, 무반으로서 나이가 많고 자손이 없는 관리들과 계묘년 이후 군적에 등록된 군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양반도 은전을 입게 했다(위의 책).<sup>26)</sup>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용감한 자들로 시위군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다른 군인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984년(성종 3) 군인 복색을 제정하였다(가)-①). 그리고 988년(성종 7)에는 송나라의 책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군적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가)-②).

계묘년은 해중 즉위년(943)이다. 계묘년 이후에 군적에 오른 대부분은 광종이 호족숙청을 위해 군사적 기반을 확대할 때 무리하게 군적에 오르게 된 군역담당 부적합자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왕권이 안정되고 전국적인 군역이 파악되면서 군사조직의 정예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군적에 오를 군인들은 군역의 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우가 보장되었던 만큼 국가의 입장에서는 군사조직의 정예화를 통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예화된 시위군의 번상과 입역을 위해 좌우군영을 설치하였다.<sup>27)</sup>

그렇다면 시위군의 번상과 입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종은 983년(성종 2)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sup>28)</sup>, 주·부·군·현의 향직을 개편하여<sup>29)</sup>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驛長의 규모도 정비

26) 「是年正月，宋帝親耕籍田大赦，改元端拱，百官內外並加恩。遂遣端等來，冊王，仍諭赦旨。王既受冊，赦絞罪以下。文班從仕年深者改服，武班年老無子孫，自癸卯年錄軍籍者，皆放還鄉里，兩班並加恩。」

27) 『고려사』 권81, 병1 병제 성종 9년 10월.

28) 『고려사』 권3, 성종 2년 2월 무자.

29) 『고려사』 권75, 선거3 銓注 鄉職 성종 2년.

하여<sup>30)</sup>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였다. 군사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 절충부가 주목된다. 좌우군영을 설치하기 한 달 전인 성종 9년(990) 9월 병자일에 효를 장려하기 위해 내린 조서에 기록된 折衝府別將 趙英<sup>31)</sup>을 통해 성종이 절충부를 설치,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군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본래 西魏 大統 16년(550)에 재상 宇文泰에 의해서 시행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이다. 鮮卑族 왕조였던 서위가 수적으로 적은 선비족만으로는 필요한 병사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漢人들로부터 병사를 징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부병제로, 이것은 北周를 거쳐 당나라 때 완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은 지방에 절충부를 설치하여 부병의 선발과 훈련, 번상과 동원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절충부의 부병은 21~59세의 丁男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3丁 가운데 1정을 뽑았다.<sup>32)</sup>

절충부에 소속된 부병은 경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변하여 숙위를 담당하였다. 거리상 경사 500리 안에 있는 절충부 소속 부병은 5番, 1,000리 안에 있는 부병은 7번, 1,500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8번으로 나누어 숙위를 하게 되었다. 5·7·8번의 숫자는 1개 절충부의 병력을 그만큼의 수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상변 숙위하는 기간은 평균 1개월에 해당되었다.<sup>33)</sup> 절충부는 모두 중앙의 제위 또는 諸率府에 분속되었으며 일반 민정을 관할하는 지방관청과는 통속관계가 없었다. 절충부에서는 매년 부병의 장적인 衛士帳을 작성하여 중앙의 병부에 보고하였다. 병부는 이에 의거하여 전국의 군액을 파악하고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때

30) 『고려사』 권82, 병2 站驛, 성종 2년.

31) 『高麗史』 권3, 성종 9년 秋9월 丙子:「教曰 凡理國家 必先務本務本莫過於孝 … 折衝府別將趙英葬母家園 朝夕祀之 … 趙英超十等 授銀青光祿大夫檢校侍御司憲 左武侯衛翊府郎將」.

32) 『新唐書』 권50, 志40 兵.

33) 김택민 주편, 『역주 唐六典』 尙書兵部, 신서원, 2003.

절충부에서 번상병사의 명부, 防人の 명부, 재부자의 교습부, 매년 고과부 등의 문서 작성은 長史, 兵曹參軍事, 錄事 등이 담당하였다.<sup>34)</sup> 즉 절충부란 그와 같은 부병의 간점을 주관하고, 간점을 통해 군적에 등재된 부병을 관리, 훈련하며 중앙 12衛 및 兵部의 發兵 명령에 응하여 일정수의 소속 부병을 調遣·징발하는 일을 맡은 군사행정기관이자 부병제의 기본조직 단위였다.<sup>35)</sup>

성종대에는 중앙의 정치제도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제도를 수용했던 때이니만큼 절충부의 설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절충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34) 菊池英夫, 김선민 옮김, 「부병제도의 전개」, 『수당오대사』, 서경, 2005.

35) 金羨珉, 『出土文書を 통해 본 唐代의 府兵-西州地域을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36) 고려의 경우 당과 같은 절충부가 설치되었는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군반씩족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절충부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원적 구성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설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기백은 목종 전시과에 나타나는 절충도위나 과의가 고려 절충부의 존재를 시사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당의 그것처럼 부병의 번상을 담당한 지방군부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였다(「고려 군인고」,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8, 100~102쪽). 즉 성종은 성종 14년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을 대폭적으로 과건하고 6위를 정비하여 부병제를 완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목종 8년에 행해진 지방관의 대폭적인 감축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종대에는 이미 절충부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였고(「高麗 光軍考」 및 「高麗 지방제도의 정비와 州縣軍의 성립」, 앞의 책) 홍승기는 이 주장을 지지하였다(「고려초기 경군의 이원적 구성론에 대하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4, 545~546쪽). 한편 이원적 구성론을 지지하는 홍원기는 당나라 부병제 원리에 입각하여 성립한 6위제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지방군부인 절충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성종9년에 보이는 절충부에 주목하고 6위가 완비되는 성종 14년경에는 실질적으로 번상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목종대 이후 절충부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부병제의 실시가 실패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부병의 번상을 관장하는 기관이 선군사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6위의 성립과 그 성격」, 『高麗前期軍制研究』, 해안, 2001, 94~95쪽). 권영국도 절충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고려가 여러 중국의 제도를 수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군목도체제를 주장하였다. 즉 중국에 비해 영토나 인구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고려의 경우 일반 군현조직과 별개의 지방군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절충부를 따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의 지방 행정조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없으나 성종 3년에 군인의 복색이 제정되고, 성종 7년에 새로운 군적이 작성되어 군액이 고정되는 그 사이로 추정된다.

성종대 단행된 일련의 군사개혁은 지방 호족세력들의 군사기반을 중앙으로 집중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12목이 설정되면서 조세 및 군역을 부과할 대상 지역이 정리되었고, 오부방리가 정해져서 수도 치안 범위가 설정되었다. 또한 절충부를 설치하여 농민번상을 담당하게 하였고, 좌우위가 설치되어 중앙군의 조직이 시작되는 단계였다.

이렇게 중앙군의 정비를 통해 중앙의 군사력을 강화해가는 동시에 송의 추밀원을 본받아 중추원을 설치하였다.<sup>37)</sup> 중추원을 설치한 시기와 과정 및 그 이유에 대하여 『고려사』 권76, 백관지1 밀직사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 왕명의 출납과 宿衛, 軍機에 관련되는 정무를 담당하였다. 성종 10년에 兵官侍郎 韓彥恭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宋의 樞密院은 곧 우리나라 直宿하는 員吏와 같은 직책을 맡은 관청입니다’라고 하자 이에 처음으로 中樞院을 설치하였다. 현종이 즉위하여 중추원과 銀臺南北院을 혁파하고 中臺省을 두어 三官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使·副使·直中臺·兼直中臺가 있었다. (현종)2년에 中臺省을 혁파하고 다시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현종)14년에 중추원의 日直員을 左右承宣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 각각 副承宣을 두었는데 이는 副樞 이하가 겸하게 하였다(『高麗史』 권76, 百官1 密直司.).

형태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출현한 것이 일종의 군사도라고 할 수 있는 군목도체제라고 하였다(『고려전기 州縣軍의 동원과 지휘』, 『史學研究』 64, 2001, 34~35쪽).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37) 중추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 41, 1976; 박용운, 「고려의 중추원 연구」, 『한국사연구』 12, 1976; 이정훈, 「고려전기 중추원의 설치와 職掌의 변화」, 『동방학지』 134, 2006; 전경숙, 「고려전기 군사기구 연구」, 2007; 권영국, 「고려전기 군정·군령기구의 정비」, 『역사와 현실』 73, 2009.

한언공은 성종 9년 12월 謝恩使로 송에 파견되었다가<sup>38)</sup>, 성종 10년 4월 송 황제가 내린 대장경을 가지고 고려로 돌아왔고<sup>39)</sup>, 6개월 뒤인 10월에 중추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한언공이 사신으로 송나라에 간 성종 9년(990)은 송이 건국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로 추밀원은 軍政을 담당한 국가의 중요한 관부로 그 직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고려 중추원제의 시범이 되었다는 송의 추밀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다) 軍國機務兵防邊備戎馬의 政令을 관장하고, 密命을 出納하여 邦治를 佐하고, 무릇 侍衛諸班職內外禁兵의 招募閱試遷補屯戍 상벌에 관련된 일을 모두 관장하며, 揭帖兵籍을 升揀廢置하여 調發 更戍가 있으면 사신을 파견하여 兵符를 내리고, 內侍省官 및 武選官將領·路分都監·緣邊都巡檢使 이상을 제수한다(『송사』 162, 직관지115 직관2 추밀원).

송의 추밀원은 軍國機務兵防邊備戎馬의 政令 및 密命의 出納을 기본으로 하고, 금위병의 관장, 내시관과 무관의 제수, 병적과 병부를 관장하는 등 兵政을 총괄하는 관부였다.

당말 지방세력이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권력의 분열적인 양상 속에서 출현한 宋은 군사제도를 정비의 주안점을 지방군을 약화시키고, 중앙군을 강화시키는 것에 두었다. 그리하여 금군을 중앙과 황제 직속 하에 두어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방군은 주둔군의 반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주된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송의 군사제도는 사실상 철저한 황제의 통수 하에 편성·운영되었고, 최고지휘관이었던 都指揮使는 단지 부대의 지휘와 통제만을

38) 『高麗史』 권3, 성종 9년 12월 戊申.

39) 『高麗史』 권3, 성종 10년 4월 庚寅.

담당한 부대장에 불과하였다. 작전은 추밀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추밀원의 관리는 모두 문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지휘와 작전권을 분리시키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군사지휘체제의 특징은 ‘문으로써 무를 통제한다(以文制武)’는 ‘文’ 우위라 할 수 있다.<sup>40)</sup>

한언공은 고려에 중추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송의 추밀원이 고려의 ‘直宿員吏’의職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直宿’에서 ‘直’은 주간에 守直하는 것을 말하고, ‘宿’은 야간에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숙원리는 왕명출납을 처리하기 위해 수직하는 문반 관료와 궁궐이나 궁성을 수비하는 군인들로 구성되며, 중추원은 이 두 계통을 모두 관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나라에서 군사기구였던 중추원의 제도를 본받으면서 군이 문반들만의 숙직기구로서 중추원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추원 설치 이전에 왕명 출납을 담당한 관료로는 內議承旨舍人, 內承旨와 같은 승지직들이 있었다.<sup>41)</sup> 따라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또다시 문반을 중심으로 하는 왕명출납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중추원은 무반들의 직속을 담당한 기구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대 이루어진 군제 개편의 핵심은 지방에 잔존해 있는 호족세력의 군사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려 중앙군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면서 이들과 구분되어 왕과 직접 연결되는 시위군에 대한 정비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치한 것이 중추원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성종대 이후 전개된 거란과 여진의 잦은 침공으로 인하여 군사적 긴박감이 전개되고 있는 시국 속에서 속출하고 있는 다양한 군사적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40) 白奇寅, 『宋-淸의 軍事制度』, 『中國軍事制度史』, 국방군사연구소, 1998, 147~148쪽.

41) 변태섭, 앞의 논문, 1976, 55쪽.

군정업무를 수행한 병부보다는 국왕 측근의 중추원을 핵심적 군사 기구로 부상시켜 업무의 분장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중추원 설치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사가 군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 때 중추부사 崔肅은 安宗에게 가숙을 이끌고 남방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sup>42)</sup> 이때 비밀스런 군사 사안을 전달한 것이 바로 중추원 관원이며 아마 안종의 家屬들이 피신할 때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파견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휘군관의 선정과 인솔병력의 규모를 책정하는 것도 중추원에서 담당하였을 것이다.<sup>43)</sup>

최승로의 상소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거란 침입이전의 군사 제도는 북방은 청천강가를 북계로 인식하고 현지인을 활용하는 방수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반면 중앙군의 경우 절충부를 설치하여 군대의 更戍제도를 정비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군액을 정리하여 정예군 위주의 중앙군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이들을 군적에 올려 관리하고, 군복을 통해 그 임무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군사적 정예화를 추구하였고 좌우군영을 설치하여 2군 6위의 중앙군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추원을 설치하여 시위군의 관리 및 軍機의 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42) 『朝鮮金石總覽』上 玄化寺碑, 242쪽. 「癸巳冬因契丹不道無故 興兵侵擾我封疆 … 成宗大王親領雄師 出推巨數 未行之前 先差中樞副使給事中崔肅傳宣曰 … 君宜將家屬 覓出南方.」

43) 1009년(목종 12) 김치양 난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목종 호위와 현종 옹립에 중추원의 관리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세력을 장악한 강조가 바로 중추원을 혁파하고 중대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추원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권한 때문일 것이며, 특히 국왕 측근의 군사력인 시위군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의 개편

#### 가. 거란의 침략과 고려의 대응

거란의 제1차 침략은 993년(성종 12) 10월부터 윤10월까지 2개월 치러진 비교적 단기간의 전쟁이었지만, 이민족의 침입에 맞선 고려 군사력의 현황이 여실히 드러난 전쟁이었다. 993년(성종 12) 거란의 소손녕은 80만의 군대를<sup>44)</sup> 이끌고 침공해 왔다. 이미 5월에 여진이 거란(요)에서 고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하였지만, 고려는 여진의 말을 믿지 않았고, 8월에 여진은 거란이 고려의 국경까지 쳐들어왔음을 다시 알렸다.

여진의 2차례의 보고로 사태가 긴박해짐을 판단한 고려는 8월 각도에 兵馬齊正使를 파견하고<sup>45)</sup> 이들을 통해 군사를 징발하여<sup>46)</sup> 전쟁에 동원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朴良柔를 上軍使, 서희를 중군사, 崔亮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에 급파하였다.<sup>47)</sup> 윤10월에는 성종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서경으로 행차한 후 고려군 지휘부가 있는 안북부까지 이동해 전황을 점검하였다.

이때 성종이 안북부로 직접 거느리고 갔던 병력은 자신이 지방 세력들의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중앙으로 집중시켰던 정예한

44) 거란군의 규모가 80만이라고 한 것은 소손녕이 고려 사신 이몽전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이며(『高麗史』 권94, 열전7 서희), 실제 병력수는 알 수 없다. 안주섬은 거란군이 원정할 때는 최고 사령관으로 도통을 두느냐에 따라 원정군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거란의 제1차 침입에서는 도통이 없었는데, 도통이 없는 경우는 대개 기병 6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원정군의 규모는 최대 6만 정도였다고 추정하였다(앞의 책, 2003, 102쪽). 그러나 임용환은 6만을 기병만을 지칭한 숫자이므로 기병 이외의 병력과 사역군까지 합하면 총동원 병력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앞의 책, 2004, 91쪽).

45) 『고려사』 권3, 성종 12년 8월.

46) 병마제정사가 파견된 諸道の 내용을 알 수 없으나 12목을 단위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시위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諡道에 파견된 兵馬齊正使는 각 지방의 절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병들의 상태를 살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지방제도, 군사제도, 도로망이 정비된 때에도 각 출신지에서 전쟁터로 동원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종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예병들을 이끌고 전투에 직접 참전하였던 것이다. 성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추진한 군사제도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거란군이 봉산성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는 尹庶顔 등이 지휘하는 선봉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윤서안 등이 사로잡히는 큰 패배를 당했고, 성종은 서경으로 되돌아왔다. 즉 실제로 전쟁에 투입한 고려의 군사력은 정예하지도 않았고, 병마제정사를 통한 군사징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종은 군사를 돌려야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성종은 거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군사 서희를 긴급 투입했다.<sup>48)</sup> 서희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전면으로 진출해 오자 거란군은 남진을 멈추고 선전 공작을 펴면서 고려의 항복을 종용했다. 이에 서경에 있던 성종은 이몽전을 파견해 강화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손녕은 이몽전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위협하였고, 고려 조정은 거란과의 교섭을 놓고 의견이 대립했다. 한 쪽은 거란의 요구대로 항복하고 화친하자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황주에서 절령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즉 평양 및 북쪽 지역을 포기하자는 할지론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아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항복이나 조건부 항복과 같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들이 논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8)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성종은 즉위하고 거란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거의 매년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있었다. 2년에는 주부군현의 향직을 개편하면서 兵部를 司兵으로 개편하여<sup>49)</sup> 중앙과 지방의 군담당 조직에 대한 위계질서를 정리하였다. 3년에는 군인의 복색을 제정하였고<sup>50)</sup>, 6년에는 주군의 병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로 만들었고<sup>51)</sup>, 7년에는 새로운 군적을 작성하였다.<sup>52)</sup> 8년에는 양계병마사를 설치하여<sup>53)</sup> 양계의 국경 관리를 충실히 하였고, 9년에는 병력의 동원과 훈련을 담당했던 절충부가 확인되며<sup>54)</sup>, 드디어 좌우군영의 설치가 이루어져 중앙군인 2군 6위위가 조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sup>55)</sup> 10년에는 중추원을 설치하여<sup>56)</sup> 중앙으로 모아진 군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군사제도를 마련했다.

성종은 후삼국 통일기 이후로 계속해서 왕권을 견제하던 요소였던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의 최소화하면서 유교적 국가체제 확립이라는 거대 틀 속에 국내의 정치체제 안정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제도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완비를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즉 성종의 지속적인 군사제도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거란의 침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성종이 추구했던 군사제도 개편의 목적이 실질적인 전쟁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군조직의 실제적인 운영보다는 중국의 틀에 맞추기 위한 위계적이고 형식적인 틀 위주의 정비였기 때문에, 각 지방 호족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나아가

49) 『고려사』 권75, 선거3 銓注 鄉職.

50) 『고려사』 권3, 성종 3년.

51) 『고려사』 권79, 식화2 農桑.

52) 『고려사』 권81, 병1 병제 성종 9년 10월.

53)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54) 『고려사』 권3, 성종 9년 秋9월 丙子.

55) 『고려사절요』 권2, 성종 9년 10월.

56) 『고려사』 권76, 百官1 密直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징발에도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할지론에 반대한 이지백의 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지백은 “경솔하게 토지를 敵國에 떼어주어 포기하는 것이, 어찌 선왕(先王)의 연등·팔관·仙郎 등의 행사를 다시 거행하고, 다른 나라의 이상한 법을 쓰지 않으면서 국가를 보전하여 태평을 이루게 하는 것만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먼저 신명(神明)에게 고하고 난 뒤에나 싸우거나 화친하는 것을 주상께서 재결(裁決)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sup>57)</sup>라며 전쟁이 한창 중인 때에 연등·팔관·선랑 등의 전통 행사를 부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려사』 찬자는 “성종이 華風을 따르기를 좋아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백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sup>58)</sup> 이는 당시 전쟁이 단지 고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성종이 추진했던 군사제도 정비 방향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즉 화풍을 주장하며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축소하려는 성종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호족과 호족 성향을 가진 관료들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거란과의 전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것이다.<sup>59)</sup>

한편 고려가 항복 권고에 응하지 않자 소손녕은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 다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993년 윤10월 소손녕은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을 공격했다. 안용진에서는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성안의 주민들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강안으로 출진해 거란군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타격을 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현지인을 활용

57) 『고려사』 권3, 성종 12년 겨울 윤10월.

58)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59) 성종대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김당택, 「서희와 성종대의 정치적 지배세력」,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2, 1999; 구산우, 「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정개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78, 1992; 구산우, 「고려 성종대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등이 참조된다.

하는 방수체제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안용진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봉산성으로 퇴각했고, 할지론에 반대하는 서희가 자청해 강화 회담에 나서 소손녕과의 담판을 벌였다.<sup>60)</sup> 그 결과 송과의 단교를 약속하여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거란에 조공하는 조건으로 강동6주를 축성하게 된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고려는 정종 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여 30만 명 규모의 군사가 파악되어 조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종 때 이들을 징발하기 위한 절충부, 징발한 군인을 편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좌우위 등의 군대가 실제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안용진 전투에서 보여지듯이 현지인을 활용한 방수체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중추원도 기능하고 있었다.

거란의 침입이 전면적인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조직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거란 침입 초반 군대 동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성종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참전했던 상황,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할지론이 대두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군사제도가 아직 제대로 운영될 만큼 정착하지 못했고,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나. 거란 침략 이후의 군사제도 개편

성종 16년(997) 10월에 성종이 죽으면서 고려의 국가체제 정비는 주춤하게 된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 성종이 죽기까지 4년여의 기간이라 이때 추진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나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민족과의 전쟁을 체험한 성종은 거란 침입 이전에 마련한 군사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60)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움직임을 보인다.

그 움직임은 우선 국경지역의 강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거란 침략 이전에 서북지역의 樹德鎮, 동계지역의 文州 등 2곳의 축성에 그쳤지만 거란 침략 이후인 성종 13~15년에 걸쳐 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994년(성종 13) 2월 소손녕은 양국이 동시에 압록강변에 축성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즉 거란은 압록강 서쪽에다 성을 쌓을 예정이니 고려도 압록강 동쪽 요충지에 성을 쌓도록 권고했다.<sup>61)</sup> 이에 서희가 주관하여 13년에는 장흥진, 귀화진, 광주, 귀주성, 안의진, 흥화진, 안주, 맹주, 선주 등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통로 상의 요지에 성을 쌓았으며, 그 외 지역에도 무려 29개소에 성을 쌓거나 보강하여 북방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하였다.<sup>62)</sup> 이 방어망의 위력은 이후 30년간 걸친 거란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증명된다.

한편 거란과의 전쟁 이후 고려는 전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방어망과 전국적인 병력동원체제를 갖추어야 했다. 전국적인 동원체제의 구축은 지방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10도의<sup>63)</sup> 획정으로 나타났다.

6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3년 2월.

62) 서일범,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999.

63) 기존 10도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려초기 일련의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성종 14년의 개편을 언급하는 수준으로만 논의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주로 외관제와 10도제에 국한되어 중앙집권의 진진, 또는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10도제는 주로 제도적 연원과 기능적 한계, 운영 담당자의 비정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당제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 당시에 함께 시행된 외관제를 보완하는 장치였다는 점, 그리고 행정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변태섭, 「고려 전기의 외관제」, 『한국사연구』 2, 1968;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에 재수록, 1971; 하현강, 『고려 지방제도의 연구』, 1977;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에 재수록, 1988; 김갑동, 『나말려초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최근 도의 편성 원리나 그것이 지향한 운영 방식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윤경진은 10도가 당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실제 도별 편성은 신라의 9주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고려초기 10도제의

995년(성종 14) 9월 경술 十道를 정하고<sup>64)</sup>, 12주에 각각 절도사를 두어 지방행정에 있어 군사적인 면이 크게 강조하였다. 당나라의 10도제는 당나라 태종이 원년에 산천의 형편에 따라 천하를 10도로 나누었다고 한다.

고려의 10도도 그 도명으로 보아,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해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10도는 關內·中原·河南·江南·嶺南·嶺東·山南·海陽·朔方·淇西였다. 또한 12절도사와 아울러 7都團練使·11團練使·21防禦使·15刺使 등의 지방관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즉 수도권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부를 독립시키고, 그 외곽인 관내도에는 다른 도보다 많은 지방거점을 포함시켰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절도사제를 도입한 것이다.<sup>65)</sup>

절도사, 단련사 등은 당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당의 절도사는 원래 변방의 군사적 임무를 맡고 있던 존재이나 安史의 난을 겪은 후 2州에서 10여 州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전국에 설치되었다. 단련사, 방어사 등도 그와 유사하게 일정 범위의 군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그 자신이 주창하는 주의 자사를 겸하고 있었다.<sup>66)</sup> 이러한 운영에서 절도사 등은 각 주의 행정을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아울러 주 단위를 넘어서는 범위의 군사적 운영체계를 담당하였다.

절도사제를 시행한 것은 성종대 거란의 침입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적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도사는 집중된 군사력을 토대로 하여 강력한 지방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왕권을 위협할

시행과 운영체계, 『진단학보』 101, 2006).

64) 『고려사』 권3, 성종 14년 9월.

65) 구산우, 「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전개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78, 1992, 163쪽.

66) 『新唐書』 권49下, 百官4下. 「大率節度觀察防禦團練使 皆兼所治州刺史」.

가능성도 있었다.

라) (현종 2년) 정월 임오일에 參禮驛에 이르니 전주절도사 趙容謙이 야인의 옷차림으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朴暹이 아뢰기를, “전주는 곧 옛 백제로서 성조계서도 미워하셨으니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 하니, 왕이 옳다 여겨 바로 長谷驛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저녁에 용겸이 왕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왕의 위세를 끼고 호령을 하고자 꾀하여 轉運使 李載·巡檢使 崔楸·殿中少監 柳僧虔과 더불어 흰 표지를 관에 꽂고 북을 치고 소리지르며 나아갔다. 채문이 사람을 시켜 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 왕은 왕후와 더불어 말을 타고 驛廳에 있었다. 채문이 지붕에 올라 묻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와같이 할 수 있느냐. 유승건이 왔느냐?” 하니, 적이 말하기를, “왔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니, 적이, “너는 또 누구냐?” 하였다. 채문이 다른 말로 대답하니 적이 말하기를, “智將軍이로구나.” 하였다. 채문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말하기를, “너는 親從 馬韓兆로구나.” 하였다. 이어 왕명으로 승건을 부르니, 승건이 말하기를,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다.” 하였다. 채문이 문 밖으로 나가서 승건을 불러 어가의 앞에까지 오게 하니 승건이 울면서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은 용겸이 한 짓이므로 신은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명령을 받들어 용겸을 불러 오겠습니다.” 하므로, 왕이 이를 허락하였더니 승건이 나가서 도망해 버렸다. 왕이 良叶에게 명하여 용겸과 이재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오자 여러 장수들이 죽이려 하였는데, 채문이 꾸짖어 이를 말리고 두 사람을 시켜 大明宮主의 말을 이끌고 가게 하였다가 얼마 뒤에 전주로 돌려보내었다(『高麗史節要』 권3).

위의 사료 라)는 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 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발호한 일을 전하고 있다. 절도사가 주도하여 피난 중인 왕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것인데, 이는 절도사가 군사적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종 14년의 10도는 이전의 주요 중심

군현에 절도사와 도호부를 두어 지배의 거점으로 삼는 한편, 교통로를 매개로 주요 결절점에 도단련사와 관찰사를 설치하여 연결망을 장악하는 것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방어 기능의 필요 정도에 따라 방어사-단련사-자사의 체계를 구성하였다.<sup>67)</sup>

이렇게 지방행정에 있어 군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군사의 징발과 훈련을 담당하는 절충부의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목종 원년의 전시과에 보면 折衝都尉·果毅·別將 등 절충부 소속 장관·차관·보좌관의 경제적 급여가 정해지고 있다.<sup>68)</sup> 당 태종은 전국 10道에 634개의 절충부를 설치하고, 절충부를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군인 1천 200명이 있으면 상부上府, 1천 명이 있으면 中府, 800명이 있으면 下府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에는 절충도위 1명, 左·右 果毅都尉 각 1명, 長史·兵曹·別將 각 1명, 校尉 6명을 두었다. 절충도위는 정4품이고, 과의도위는 종5품이었다. 보병의 경우 매년 12월에 절충도위가 통솔하여 전법을 가르쳤고, 군대를 동원할 때 符契를 내리는데 符를 전부 내려 보냈으면 절충도위 이하가 다 동원되며 다 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果毅가 동원되며 적게 내려 보냈으면 별장이 동원되었다.<sup>69)</sup> 고려의 경우 5품인 중낭장과 절충도위가, 6품인 낭장과 과의가 같이 전시과 지급을 받고 있어 唐制보다 한 등급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운영은 당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절충부의 조직을 강화한 것은 아마 거란 침략 당시 제대로 군사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목종 원년 전시과에 상장군, 대장군, 제위장군 등의 호칭이

67) 윤경진, 앞의 논문, 2006, 131쪽.

68)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田柴科 목종 원년 12월. 9과 전지 60, 시지 33-諸郎中 中郎將 折衝都尉/10과 전지 55, 시지 30-郎將 諸員外郎 果毅/13과 전지 40, 시지 20-別將 散折衝都尉.

69) 『新唐書』 권50, 志40 兵.

보이고, 監門衛 등 중앙군인 6위의 명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군사조직의 체계화가 이루어졌고, 2군 6위 중 6위의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성종 2년 3월에 왕이 詳政殿에 나와 문무관 원윤 이상의 관료에게 말 한필씩을 하사한 기록이 있는데<sup>70)</sup>, 성종 8년(989) 2월에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외 문관 5품, 무관 4품 이상 관리들의 질병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적어 보고하면 의료 관원들이 가서 치료하도록 敎를 내리고 있다.<sup>71)</sup> 이를 통해 보면 성종 2년까지는 태조대처럼 문무관만 분화된 상태에서 그 서열은 官階를 이용해 구분했지만 성종 8년 이후부터는 품계가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상·대장군의 제도가 완벽하게 제도화되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상장군직제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성종 13년이 주목된다. 성종 12년 12월 거란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군공 자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전공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현종 10년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운 9,472명에게 階職을 높여준 예를 참고할 수 있다.<sup>72)</sup> 전쟁이 끝난 후인 성종 13년 4월에는 전공자들에게 작을 1~2급씩 올려 주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3일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sup>73)</sup> 이렇게 대대적인 포상이 이루어졌다면, 성종 12년 거란과의 전쟁에 참여해 대장군으로 공을 세운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상장군 제도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장군의 직제는 품계의 기록이 나타나는 성종 8년에서 13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에서 상장군은 현종 원년 10월에 검교상서우복야 상장군인 안소

70) 『고려사』 권3, 성종 2년 3월 癸未.

71) 『고려사』 권3, 성종8년 春2월 庚辰.

72) 『고려사』 권81, 兵1 兵制 현종 10년 7월.

73) 『고려사』 권3, 성종 13년 4월.

광을 행영도병마사로 삼았다고 하여 처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995(성종 14)년에 掌衛府를 衛尉寺로 고쳤다.<sup>74)</sup> 위 위시는 泰封에서 왕의 시위군으로 설치되었던 內軍에서 비롯되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960년(광종 11) 시위군의 수를 크게 늘리면서 掌衛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뒤 司衛寺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995년(성종 14)부터 衛尉寺라고 하였으며, 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데 필요한 儀仗과 器物 등의 관리를 맡았다. 즉 성종은 거란 침략을 통해 시위군을 중심으로 한 군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위시로의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 침략 이후 성종은 4년여에 걸쳐 대대적인 군사제도 개편을 모색하였다. 우선 북쪽의 축성을 활발히 하여 안정적인 국경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지방제도를 10도로 개편하고 12목에 절도사를 파견하여 지방행정에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의 징발과 동원에 관계된 절충부에 절충도위, 과의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군인 6위의 조직에도 박차를 가했으며, 무직에서도 상장군 이하 산원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10도와 절도사체제, 절충부 등은 이후 현종대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만 중앙군의 조직과 무직의 체계 등은 고려전기의 골격을 이루었다. 거란 침략 이전 군사제도 정비의 방향이 군사의 운영을 위한 틀을 짜기 위한 것이었다면 거란 침략 이후의 방향은 그 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용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74) 『고려사』 권76, 백관1 위위시.

#### 4. 맺음말

이상으로 성종대 거란침입을 통해 고려전기 군사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성종은 집권 후 崔承老의 상소를 받아들여 국정 전반을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최승로가 제시한 군제개혁의 방안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군비의 축소와 그를 통한 국가 재정의 확보, 나아가 왕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국경을 확실히 정하고, 정예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재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성종은 거란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거의 매년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2년에는 州府郡縣의 鄉職을 개편하면서 兵部를 司兵으로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정리하였다. 3년에는 군인의 복색을 정하였고, 6년에는 州郡의 병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로 만들었고, 7년에는 새로운 군적을 작성하였다. 8년에는 양계병마사를 설치하여 양계의 국경 관리를 충실히 하였고, 9년에는 折衝府가 확인되며, 군영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10년에는 중추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군사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성종이 추구했던 군사제도 개혁의 목적은 실질적인 전쟁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후삼국통일기 이후로 계속해서 왕권을 견제하던 요소였던 지방호족들의 군사력의 최소화하면서 유교적 국가체제 확립이라는 거대 틀 속에 중국식 군사제도로의 형식적 완비를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호족 및 호족 성향을 가진 관료층들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거란의 침입이 전면적인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조직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거란 침입 초반 군대 동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성종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참전했던 상황,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할지론이 대두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군사제도가 아직 제대로 운영될 만큼 정착하지 못했고,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 침략 이후 성종은 대대적인 군사제도 개편을 모색하였다. 우선 북쪽의 축성을 활발히 하여 안정적인 국경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지방제도를 10道로 개편하고 12牧에 節度使를 파견하여 지방행정에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의 징발과 동원에 관계된 절충부에 折衝都尉, 果毅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군인 6위의 조직에도 박차를 가했으며, 武職에서도 上將軍 이하 散員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10도와 절도사체제, 절충부 등은 이후 현종대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만 중앙군의 조직과 무직의 체계 등은 고려전기의 골격을 이루었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성종, 거란, 거란침입, 서희, 최승로, 절도사, 10도, 군사제도

<ABSTRACT>

The invasion of the Kitan at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n Goryeo dynas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ystem

Jeon, Gyung-Sook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ystem in early Goryeo dynasty after the invasion of the Kita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King Seongjong reformed the overall government system after seizing the power by accepting the appeal of Choe Seung-ro. In this process, the reformation of the military system was carried out. The plan of the military reform suggested by Choe Seung-ro was to secure national finance by reducing any unnecessary military expenditure, and to reinforce the royal authority. For this purpose, he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was to clarify the border and to reshuffle the military force with elite corps at its center.

However, the purpose of the military system improvement sought by King Seongjong did not focus on the actual capability of war execution. It seems that he sought to establish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system in a grand frame for minimizing the military force of the local nobles who contained the royal authority since the unification of the Post Three Kingdom period, and also for securing Confucian national system.

As the invasion of the Kitan was not full-stretch war, it was not clear what type of the military system for engaging in the war. However,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King took part in the war directly, and that the discussion of parcel the country was raised without any engagement of the war, the military system seems not to be developed in balance between the Central Military Forces and the Local Military

Forces.

After the invasion of the Kitan, King Seongjong attempted to reshuffle the military system to a full stretch. First of all, he developed fortresses in the north to secure stable border defense line, reorganized the local system with 10 provinces (Dos) and dispatched military governors to 12 Counties (Moks) which reinforced the military character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he installed Jeolchungdowi and Gwau at Jeolchungbu, a department for military recruitment and mobilization for systematic operation. And, he also promoted to reshuffle 6 Wi (the Six Divisions) and developed a rank system in the military section from General (Sangjanggun) to the private (Sanwon). While those changes mentioned above such as 10 provinces (Dos), military governor(Jeoldosa) system and Jeolchungbu were executed under the reign of King Hyeonjong,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military force and the military hierarchical system remained as the backbone in the early Goryeo period.

Key Words : the invasion of the Kitan, King Seongjong, 6 Wi(the Six Divisions),  
Jeolchungbu, 10 Do, Jeoldosa, the military system

